

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9.02.27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2.17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9.02.17.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9.02.27)

상정, 실사,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날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관련 조례의 미비한 법규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저소득주민의 복지 관련 조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명 및 목적에 “복지증진”이라는 문구사용(제명 및 안 제1조)

- 2)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를 구체화 함(안 제2조)
- 3) 지원내용에 보장구 지원,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,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수준을 규정함(안 제3조)
- 4)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신청, 조사, 추천의 내용을 규정하고, 지원예산에 대한 한계, 추천의 공정성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일부 확대하고,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규정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조문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보면, 저소득주민의 복지 관련 조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및 목적에 “복지증진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,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포함되도록 지원대상자를 구체화 하였음.
지원내용에 보장구 지원,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,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,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신청, 조사, 추천의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, 지원예산에 대한 한계, 추천의 공정성 등을 규정하였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, 월동대책비, 긴급 구호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일부

에 제한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경제사정의 악화 등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여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예기치 못한 재해·재난사고 및 실업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,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노약자를 위한 보장구 및 문화체육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지원 시책을 강화하였는바, 이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